##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6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조은희 · 이성권 · 서일준

박정하 • 신성범 • 김용태

이만희 • 김소희 • 조배숙

주호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업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제의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어떤 대부업자가 대규모 폰지사기(Ponzi scheme, 신규투자자의 금전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대부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이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규제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대부거래시장 내 금융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 만 적용되는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에게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제5항제6호 신설 및 제7조의3제1항).
- 나.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제3항 각호 신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5호"를 "제5호,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3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을 "대부업자는" 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 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
-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폐업에 관한 사항
- 4. 대부업자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대부업자의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자산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등록갱신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
	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u>아니할 것</u>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2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생 덕) 3. 제1항제2호, 제3호, <u>제5호</u> 의	1. · 2. (연영과 실금) 3제5호,
5. 제1성제4모, 제5모, <u>제5모</u> 의	ى <u>ان چى</u>

요건을 갖출 것

- 4. (생략)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 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 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 7. (생략)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대부업 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 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② (생 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 ③ -----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 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제6호-----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등록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u>갱신에 관한 사항</u>
<u>&lt;신 설&gt;</u>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변경등록이나 폐업에 관한
	<u>사항</u>
<u>&lt;신 설&gt;</u>	4. 대부업자등의 현황에 관한
	<u>사항</u>
<u>&lt;신 설&gt;</u>	5. 대부업자의 영업실태 조사결
	과 등에 관한 사항